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900206

신 청 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피신청인: 노호근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길 10 세진빌딩 6층(역삼동)

피신청인: 노호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2(조원동) 301호

분쟁 도메인이름은 "anewsa.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후이즈네트웍스(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림포스트타워 3차 11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9. 10. 1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9. 10. 22.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9. 10. 22.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9. 10. 2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9. 11. 12.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9. 11. 12.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9. 11. 13.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정찬모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9. 11. 14.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9. 11. 14.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은 2008. 10. 28 출범한 민영 뉴스통신사로서 이 사건 분쟁대상도메인이름인 anewsa.com을 2009. 2. 2. 최

초 창립자 중 1인인 김종선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그가 퇴사하면서 2011. 1. 이후 당시 직원이던 피신청인 노호근의 명의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인정된다.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된 홈페이지를 통해 구독자에게 기사를 공급하고 있으며, 위 도메인 이름이 현재까지 신청인 회사의 공고방법으로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인 피신청인이 2018. 10. 8 퇴사하였음에도 위 도메인이름을 신청인회사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후이즈 관리를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바 위 도메인이름의 신청인으로서의 이전을 요청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인 "anewsa.com"의 요부인 "anewsa"가 신청인의 영문 사명인 Asia News Agency의 약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실제로 지난 10년 이상 이를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상관습상 서비스표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표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B.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 여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는 바 피신청인은 위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데에서 나아가 후이즈의 등록인 연락처정보를 종전 회사메일주소에서 자신의 개인메일주소로 변경하는 등 피신청인에 의한 위 도메인이름의 지속적인 보유가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현재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더욱 심각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anewsa.com>을 이전 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정찬모

결정일: 2019년 11월 28일